

계룡시 주차장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62 호
의결년월일	2004. 9. . (제 10 회)

제출일자	2004. 8. .
제출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계룡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주차장 운영을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주차장 운영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3조제4항).

<현 행>

- 계룡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개 정>

-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은 외곽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의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주차 차량의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04. 7. 30 ~ 8. 20(20일간)
 - 제출의견 : 없음
- 관련법령
 -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 제3조
- 신·구조문대비표

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7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제릉시주차장설치조례

제3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.

③제7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,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

1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등급이 심하여 대리운전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2. 지체장애자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할 수 있다.
3.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성실납세증을 차량에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4. 800cc이하 경·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5.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20%, 5부제 참여차량은 40%, 2부제 참여차량은 50%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
6.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자가운전차량과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/50을 경감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3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③ (생략)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. 1.~6. (생략) <신설>	제3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1.~6. (현행과 같음) 7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고시에 의거 일정 시간 동안 주차요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